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- 110호

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

「최저임금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8. 5.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1. 최저임금액

결정단위 / 업 종	시 간 급
모 든 산 업	8,720원

◈ **월 환산액 1,822,480원**: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,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 기준

2.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

○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

3. 최저임금 적용 기간: 2021. 1. 1. ~ 2021. 12. 31.